

# 第271回國會 政治關係法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1 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8年2月20日(水)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간사선임
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보고서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審査된案件

- |                                  |   |
|----------------------------------|---|
| 1. 간사선임 .....                    | 1 |
| o 간사(윤호중) 인사 .....               | 2 |
| 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보고서 .....         | 2 |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 | 2 |

(14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선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이 바쁘시고 분주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치 특위는 지난해 여름 7월부터 전체회의 열 번, 소회의 열아홉 번 해서 스물아홉 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으로부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간사선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절차를 밟는 문제가 늦어졌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임하도

록 하겠습니다.

### 1. 간사선임

(14시32분)

○위원장 이상배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윤호중 위원님과 양형일 위원님께서 간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마는 해당 교섭단체의 변경에 따라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고 간사의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례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에서 간사로 내정해 오신 분을 위원님들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간사 선임을 해 왔습니다.

통합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위원님을 간사로 내정해 오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윤호중 위원님을 우리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윤호중) 인사

○위원장 이상배 간사로 선임되신 윤호중 간사께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존경하는 이상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간사로 선임하는 데 동의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또 국회의 대선배이신 이상배 위원장님,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님, 모두 모시고 배우는 자세로 간사의 소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모로 깨우쳐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배 수고하셨습니다.

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보고서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계속)  
(14시34분)

○위원장 이상배 다음은 제2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보고서 및 제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환기 전문위원입니다.

그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파란 책자 1권이 있고요. 다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참고자료라는 별도의 유인물하고 다음에 보도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고 공식으로 낸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1월 18일부터 활동을 해서 2월 15일 날 획정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 와서 획정위원회는 그 활동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3쪽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님으로 수고하신 열한 분의 명단이 있습니다. 박병섭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하셨고 오늘 또 좋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그간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아홉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각 아홉 번의 회의를 했을 때 주요 의사일정과 논의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2개의 안을 국회의장님께 제출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이 2개의 안이 채택되게 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박병섭 위원장님의 별도 말씀이 있으실 것이고요.

2개의 안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안(I)은 지역구 의석 숫자를 245석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획정위원회에서 비례대표는 동수를 유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앞에 말씀드렸던 별도자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참고자료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가장 큰 원칙을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별도자료를 보게 되면 2001년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입니다. ‘평균 인구 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그러나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가 상하 33<sup>1</sup>/<sub>3</sub>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의 경우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 수로부터 +57%의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그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게 됐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 판시 기준에 따른 전국 선거구 인구 기준은, 작년 12월 말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4926만 8928명이고 이 인구를 243개 지역구로 나누었을 때 평균 인구는 20만 2753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하한 50% 상한 50%로 나눌 때는 소수점이 나오게 됩니다. 소수점을 반영했을 때는 상한이 30만 4129명이고 하한 10만 1376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3 대 1로 나누었을 적에는 상한이 8로 끊어져야 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에 의하게 되면 상한이 9로 끊어지는 수학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따

라서 일단 243개 선거구의 전체 인수로 보고……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선거구 내용 중에서 헌법의 내용에 불합치하는 부분이 있는 선거구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상한 초과 7개 선거구(용인시을, 화성시, 용인시갑, 광주광산구, 해운대구기장군갑, 수원시권선구, 고양시일산구을)를 저희가 검토해본 내용 중에 용인시는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서 선거구를 처인구·수지구·기흥구로 조정하면 제1안의 경우에는 1석 증가, 제2안의 경우에는 기흥구 추가 분구로 2석 증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일산구을의 경우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선거구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조정하면 자체 조정으로 추가 증가요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해운대구기장군갑의 경우 해운대구기장군을 선거구간 자체 조정을 할 때 추가 증가요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하한 미만 선거구가 2개가 나타났습니다. 함평영광과 강진완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조정을 하다 보면 상한에 부딪혀서 결과적으로 그냥 놔뒀을 때는 위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에 따라 제1안과 2안에 의한 추가 조정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파주시이고 하나는 용인시기흥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인구 하한 미달로 17대에 통합되었다가 2개의 행정구역이 각각 인구 하한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분구 조정 한 군데, 이천시 여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합 조정 3개 선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 때 분구가 되었다가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인구조정으로 통합이 된 지역이 부산남구 갑·을이 되었고 대구달서 갑·을·병이 되겠습니다. 여수시 갑·을 부분도 이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4쪽, 6항이 되겠습니다. 구역조정 3개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그중 해운대구기장군 갑·을은 자체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대구북구을도 갑·을 간의 조정, 천안시을도 갑·을 간의 조정…… 이 인구 숫자들은 조정하기 전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보고서 2쪽 상단의 공직선거법 25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사항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자보고서 21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245석이 되는 제1안이 되게 되면 지역선거구 수는 245개가 되고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 1098명이 되겠습니다. 최고는 용인시기흥구 선거구가 되었고 최저는 경북 영천시 선거구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인구편차는 +49.9%~ -47.4%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안에 따라왔을 때 선거구 조정됐던 내용들은 보도자료 별도로 보게 되면 1장으로 요약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18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방안 1안과 2안이 되겠습니다. 2안도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조정을 해서 5개 선거구가…… 용인시 2개를 3개로 늘이고 화성시, 권선구, 광산구, 이천시 여주군이 분구가 되었습니다.

3개 선거구가 감소되었습니다. 부산남구 갑·을과 여수시갑을 통합하고 달서구 갑·을·병을 갑·을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1안에 의했을 때 전남 선거구 조정 부분은 여수시에 감축되는 외에 추가 1개의 선거구를 감축했을 때 제시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현행 6개의 선거구를 조정해서 5개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목포시, 순천시, 무안군신안군, 고흥군보성군, 나주시화순군은 현행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추가 조정이 파주시를 분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위헌이 되기 때문에 파주시를 분구하고 구역조정은 해운대구기장군갑, 대구북구을을 조정하고 천안시을의 경우에는 2안의 경우에 들어갈 때는 역시 위헌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안시을의 경우는 인구 편차도 커서 1안부터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5개 지역구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었고 다음에 오른쪽의 2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석 수가 247개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같게 되는데 달라지는 부분은 전남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서 여수

시 하나는 조정이 되지마는 현재 남아 있는 선거구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구획을 정리해 가지고 6개 선거구를 재조정해서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목포시, 순천시, 무안군·신안군, 고흥군·보성군, 해남군·진도군은 현행을 유지하고 이 경우에 평균 인구의 50%를 초과하는 파주시 분구와 다음에 용인시 기흥구 분구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구역조정은 1안과 내용이 같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구가 24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7쪽이 되겠습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77쪽이 되겠고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별도 참고자료 4쪽 보게 되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의장님과 정치관계특위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큰 내용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제10항은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존중하여 달라는 의견이고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에 선거구 획정 시한의 준수 및 상설기구화를 건의하셨고 도시·농촌의 획정 기준을 이원화하여 가지고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 농촌지역 유권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달라는 말씀과 선거구간 인구 편차의 감소 방안에 대한 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전문위원께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잠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성호 위원님과 류근찬 위원님께서 새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새로 보임되어 오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위원님 인사하십시오.

○**정성호 위원** 양주·동두천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배 위원장님 모시고, 또 동료 위원들의 지도를 받아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다음 류근찬 위원님 인사하시

지요.

○**류근찬 위원** 충청남도 보령·서천 출신 류근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배 위원장님 모시고 동료 위원들과 열심히 정치개혁과 관련된 특위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를 마련하시느라고 아주 애쓰신 박병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어려운 걸음을 하셔서 나와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으니까 전반적인 말씀에 혹 빠진 게 있으십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전문위원님께서 실무적인 보고를 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논의된 방향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에 위촉장을 받고 2월 15일까지 9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먼저 공청회를 해서 좀 더 많은 전문가님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노력했고 정당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이전에 원칙적인 문제에 관한 논의를 심도 깊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획정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선거구 획정은 인구, 행정구역 등을 참작하여 획정해야 한다는 그 조항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거구 평균 인구 수의 편차 상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일반인들한테는 대개 3 대 1 기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이동상황으로 보실 때 대도시가 인구가 늘고 있어서 대도시 선거구의 분구가 불가피하고 농촌지역 선거구의 통폐합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농촌지역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국가정책으로부터 소외를 느낀다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농촌지역 선거구를 좀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원칙적인 의견의 접근이 있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분구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역 선거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대표를 줄여서 이것을 해결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지금 국민들이 정당투표를 따로 하고 있고 또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이라든가 장애인들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고 지역구가 늘어난 부분을 비례대표를 줄여서 해결해서는 안 되겠다는 데 대해서 대체적으로 의견의 접근을 봤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의원 정수가 늘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의원 정수가 299명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늘리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위원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로는 인구 대비 국회의원 정수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적은 편이고 또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나 국회의 업무량의 증가로 봐서 국회의원 정수의 증가는 좀 불가피한 게 아니냐, 오히려 당사자인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민간 전문가들이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데 의견을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이 국민정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늘리는 부분은 불가능하더라도 소폭적으로라도 늘리는 방향으로 좀 논의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데 초기에 의견의 접근을 봤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분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은 용인, 화성, 광주 광산, 수원 권선, 그다음에 여주·이천입니다. 여주·이천의 경우에는 여주가 최소 인구수에 미달을 해서 인근 이천에 통폐합됐습니다마는 이제 인구가 늘어서 독립 행정구역은 1개의 선거구를 가져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분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개 분구 대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통합 대상으로서 여수, 부산 남구, 달서구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상한선을 넘어서 분구를 했지만 인구가 다소 줄어서 상한선 이하이기 때문에 1개의 행정구역의 경우 1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는 그런 정신에 비추어서 3개 선거구를 통합하기로 의견의 접근을 비교적 쉽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전남의 함

평·영광 선거구와 강진·완도 선거구였습니다. 이 선거구의 경우에는 선거구 인구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을 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대충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는 봤는데 2개의 선거구를 인근 시군에 통폐합해서 지역구를 2개를 줄이는 방안과 전체적인 전남 선거구를 좀 조정을 해서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안, 그리고 1개의 선거구는 통폐합을 하고 1개의 선거구는 조정을 해서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고 이 2개를 통폐합하는 안은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초기부터의 분위기는 농촌 지역구를 보호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위원들이 전원 다 공감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2개의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부분은 안으로서 제기가 되지는 않았고 현행 유지, 즉 조정을 통해서 선거구 숫자를 유지하는 방안은 위원회의 처음부터 기조였던 농촌 선거구를 보호하는 안에 가장 충실한 안이라는 의미에서 안이 제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줄이고 하나는 조정하는 안은 아무리 농촌 선거구를 보호한다 할지라도 2개의 선거구가 문제가 됐는데 이것을 다 그대로 현행 유지한다는 것은 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어쨌든 의석을 1석을 늘리는 부분, 지금 우리가 1석을 늘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1석이 더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석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석을 이렇게 2석씩이나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와의 조화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의견의 대립이 있었고, 사실 우리 위원회가 건의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 전에 확정안을 보고하게 돼 있는데 불과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선거구민들이나 아니면 입후보자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확정위원회에서 확정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전에 이 문제를 매듭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2개의 선거구 조정 문제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지게 돼서 설 연휴 끝난 다음에는 매일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조정하려고 했고 또 위원장인 저로서도 두 안이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확정안을 하나만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의

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만장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절실히 느낀 것은 이것은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확정위원회가 단일안을 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동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박병섭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보고서 마련을 위해서 고심하신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주성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배** 예.

○**주성영 위원** 오늘 선관위 사무총장은 안 나오니까?

○**위원장 이상배** 어디 갔어요, 선관위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실장 이종우** 지금 확정위원회 사항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리를 잠깐……

○**주성영 위원** 지금 나오라 그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실장 이종우** 나와 계십니다. 들어오시라고……

○**위원장 이상배** 지금 빨리 출석하라고 그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실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위원장님,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예, 선병렬 위원님.

○**선병렬 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감사합니다.

○**선병렬 위원** 대전 동구의 선병렬 위원인데요.

건의문에 최종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요청이 여러 가지 근본적인 고민과 더불어서 담겨져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1안이든 2안이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선병렬 위원** 그리고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이것은 이 건의문에는 기재가 안 돼 있지만 피치 못하게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결론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이렇게 의견을 존중해 달라, 비례대표 정수를 늘려 달라 함으로 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건의문에 기재할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자기 의사를 극명하게 표현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역할에 좀 소홀히 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은 논의 과정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하는 과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렇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그런데 지금 그 표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러 빼 게 아니고 지역 선거구가 늘고 비례가 현행이나 아마 확대가 되면 당연히 논리적 귀결로서 의원 정수가 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러 표현은 안 한 것이지만 일부러 빼 것은 아닙니다.

○**선병렬 위원** 아,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빼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것은 당연했기 때문에 아마 기재를 안 했을 겁니다.

○**선병렬 위원** 당연한 겁니까, 그것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니다.

○**양형일 위원** 위원장님, 선병렬 위원님 방금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능에 관해서.

○**위원장 이상배** 어차피 죽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순서대로 하지요.

(「질의를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간사분들 그러면 그냥 할까요? 그러면 선병렬 위원이 하셨으니까……

○**주성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주성영 위원 하시겠습니까?

주성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보고서 작성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사실 임무가 끝났는데 오늘 이렇게 호의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또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월급받았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월급받는 것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회의하면 회의수당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를 받아 보고 또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여기 획정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말씀하신 1안 2안에 대해서는 선거구획정 기준이라고 1번으로 있어요.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선거구 획정 토론을 하면서 기준은 없었습니까? 물론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여기에 활자화될 만한 기준을 세우지는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기준은 공직선거법 25조와 현재 판결이 기준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는데 전체 인구 수를 선거구 243으로 나눈 평균 인구 수의 편차 ±50이 기준이었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다음에 사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에 비례대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포함되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권한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주성영 위원** 권한에 포함 안 되는데 건의사항도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한에 속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성영 위원** 본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부산하고 대구의 남구하고 달서구를 한 석씩 줄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러한 고려 과정에서 부산 같으면 남구가 현재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고 또 올해 7, 8월경에 일부는 벌써 입주했고 입주 중인데 5566세대, 1세대에 3명씩 곱하면 1만 6698명의 인구 증가가 실질적으로 예상되고 또 그 지역에 혁신도시 건설이라든지 해작사령부가 이전

한다든지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건축사업 등과 관련해 가지고 인구 증가가 불가피한 그러한 사항도 고려가 되었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그 사항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전에 선거구 조정의 경우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기준일을 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주성영 위원** 그런데 이게 위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몇 차례 이야기한 헌법재판소 판시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획정위원회에서는 합리적으로 획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다음에 대구시 달서구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거기에 일시적으로 재건축을 위해 가지고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당주공아파트, 송현동 주공아파트 4개 단지 아파트의 인구가 7683세대에 2만 5354명이 일시적으로 인근에 이사를 가 있어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주성영 위원** 그다음에 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가 200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해 오는 3만 5130여 명, 그다음에 2009년 5개 단지에 수만 명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하셨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것도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 구체적 타당성에 관한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우리가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성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헌법재판소 판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성영 위원** 그렇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주성영 위원** 그다음에 여수 얘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했느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건의사항에 앞으로 도농간의 문제를 감안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니다.

○주성영 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장치가 없는 상황이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니다.

○주성영 위원 뭐 감안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참고자료로 만든 자료인데 여기를 보면 대구 인구가 2007년 12월 말에 약 250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인천 인구가 266만 명이네요. 그러면 현재 선거구가 12개, 12개로 되어 있어요. 안에 따르면 대구가 11개로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주성영 위원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지금 대구의 문제도 그렇고 특히 더 문제는 대전의 문제가……

○주성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제 차차 물어갈게요.

이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대전을 보니까 인구가 147만 명이고 광주는 141만 명인데 선거구 수는 광주는 7이고 대전은 6이네요. 이것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광역시 아닌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다음에 전남은 190만 명이에요. 그런데 13개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활동을 하려면 헌법재판소의 50% 편차, 1 대 3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그것하고 전국의 인구가 4900만 명 아닙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주성영 위원 그러면 4900만 명을 전국의 시도별로 분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선관위 사무총장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지요? 전국의 선거구하고 인구하고가 적절하니 적절하지 않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신 적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주성영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대구 부산 서울의 인구에 비해서 선거구가 적절하다는 평가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하여

튼 제 기억은 없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이 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에 전체의 기준은 없으나 1안 2안에 대한 기준은 여기 나와 있어요. 보면 통합조정때 따른 선거구 변화를 가능한 최소화하려고 한다 또 선거 기간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선거구가 현재 정면으로 헌법재판소 판시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는 않느냐, 또 일시적인 인구 변화는 어떻게 변해 갈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지금 광역시 간에 상당히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고 특히 대전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라는 공직선거법 25조에 의하면 인구와 행정구역, 특히 시·군·구별로 선거구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법 안의 테두리에서 광역시 간의 인구 편차가 심하다 할지라도 구별로 분구라든가 합구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좀 더……

○주성영 위원 여하튼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라는 오늘 현출되어 있는 보고서를 검토해 볼 때는 전혀 그러한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대구의 중·남구가 지난번 17대 선거 때 합쳐졌어요. 그래서 남구가 17만 수천 명이고 중구가 7만 수천 명입니다. 그러면 중구하고 남구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 달서구예요. 달서구에다가, 17만 명의 남구는 존치시키고 달서구에다가 중구를 합쳐서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제로서 대한민국 인구 전체, 인천 광역시와 대구광역시와 인수로 비교해 볼 때 12개 선거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16대 총선에서도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부산 해운대구하고 기장군, 또 울산 북구하고 강서구, 또 인천 서구하고 강화군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셨겠습니까라는 공직선거법 25조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주성영 위원 그래서 부칙 7조로 해서 해결을



했어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맞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러면 부칙 7조를 개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러면 중간에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7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25조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 예외규정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04년 선거가 아니고 2008년도 선거에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부칙에 정한 부분은 그 선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성영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특정한 선거를 정해서 부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2008년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됩니다.

○주성영 위원 부칙을 그대로 문리해석을 하면 2004년에만 적용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2008년 선거에는 복귀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성영 위원 왜 그렇지 않다고 보는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 부칙 조문이 2004년도 선거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08년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성영 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 부분은 논의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타당하신 주장입니다마는 예외조항을 가능하면 두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것이 법률이 정한 것인데 위원회에서 말로써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해운대라든가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예외규정을 가능하면……

○주성영 위원 아니, 그러면 대구의 남구를 내버려두고 중구하고 달서구하고 합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입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성영 위원 그런 것도 검토가 되었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좀 예외를 많이 두지 않는 쪽으로……

○위원장 이상배 주성영 위원, 지금 이것이 말이지요……

○주성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위원 그다음에 참고자료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참고자료 '18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안' 이 자료를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것입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우리 전문위원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영 위원 전문위원이 만들었습니까?

이 선거구 획정 방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구분을 1, 2, 3으로 나누었는데 구분의 1번이 전남 2석 감소, 2번이 전남 1석 감소, 3번이 전남 의석수 유지, 그다음에 가로로는 이천·여주 지역 현행 유지, 이천·여주 지역 분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남 지역이 독립상수입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중간 회의자료로 이 회의자료를 작성했는데 이 회의자료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전남이라든가 여주 이 부분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

○주성영 위원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던 적었던 간에 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1안, 2안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건의 가로 두 번째 세로 두 번째에 합체되는 전남 1석 감소하고 여주·이천군 분구하는 그것이 똑같이 1안이고 그다음에 전남 의석 수를 유지하고 여주·이천군 분구하는 그것이 똑같은 2안이에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맞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이 제가 말씀드린 원칙이 있었느냐, 또는 전국 인구 분포에 따른 그런 각 지역별 편차를 고려했느냐, 1인 2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서 전남 지역을 기준으로 했지 않느냐라고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위원님,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쟁점의 경우 위원회에서 쉽게 합의에 도달을 했는데 마지막 2개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 회의를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 획정위원회 일의 전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성영 위원** 예,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형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아니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양형일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님께서 월급 받으셨냐고 물어보셨는데 법에는 월급을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선거구획정위원들에게. 필요로 하는 회의비나 이런 것은 드릴 수 있지만 월급은 드릴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회의 법적 기능의 범주라고 그럴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검토를 하셨는지, 법에 의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은 법적 권리로, 권한의 범위로 인정을 했는데 비례대표 숫자 또 지역구 숫자 여기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법에 부여 받은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법적 권한 없는 것은 알고 있었구요, 그래서 건의 사항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양형일 위원** 건의 사항이면 별도로 건의 사항으로 첨부하시지 그것을 갖다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경우는 본문의 경우이고 나머지 첨부서류에서 건의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형일 위원** 외국의 입법례를, 외국에서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

겠습니까?

대부분 연세가 좀, 나이가 좀 높으신 연령층 이런 분들이 농어촌에 많이 잔류하고 계시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유권자의 숫자 이런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위원님께서 인구 수와 유권자 숫자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논의는 되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례가 되고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유권자 수가 높으리라는 그런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문에는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형일 위원** 지금 지역구의 성격들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행정구역 내지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분할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붙일 수는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형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배경을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 달서구의 갑·을·병 여기를 합구하는 문제하고 여수를 합구하는 문제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여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정부가 권장해서 도농복합도시의 형태로 통합을 유도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수는 농어촌 지역이 존재하면서 또 도시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시다시피 여천군과 여수시가 통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조(불이익배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이나 하면, 제가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이것을 원용 내지는 준용하자면 여기서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익도 당연히 포함된다라

고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와 같이 도농복합도시로서 종전에 농촌지역과 도시권역에 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합치되어지는 이런 지역의 합구 문제는 단순한 인구 수치로 판단해서 다른 지역의 합구와 동물상에 두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았고 또 자료를 위원들이 다 숙지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참작해서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양형일 위원** 논의만 하셨다, 논의하고 검토는 해보셨다 하는데 사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순수 민간인들로 외부에 설치하는 이유는 정치권에게 바로 맡겼을 경우에 정치권이 지나치게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때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취지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존중하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이고 과감한 안을 거기에서 제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여수의 경우도 그렇지만 지금 주성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달서구의 부분도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항변이 있었고 부산 남구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고려하다 보면 저희들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상당한 의견 교환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형일 위원**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의 검토가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전권이 있는 사항으로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 선거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형일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의견을 제출한 것이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없습니다.

○**양형일 위원** 전혀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양형일 위원** 저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순히 선거만 관리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간단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도 조금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국회 전권 사항인데 선관위가 관여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양형일 위원** 조금 전에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여수 같은 경우 지역은 특별하게 과거에 자치단체들이 합쳐진 그런 배경을 감안해서 임해야 한다는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해당 각 정당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래서 다 의견 진술의 기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훈 위원** 정개특위 위원 중에서 지역구가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류근찬 위원** 질의 순서를 왜 정하지 않으시지요?

○**위원장 이상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존중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시간을 제한해야 되겠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끝이어서 정부조직법이 타결이 되어 가지고 장소를 또 옮겨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씩만 하십시오, 5분씩만.

김정훈 위원님 집약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정훈 위원** 저부터 시간이 제한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제일 할말이 많은 사람이…… 제가 지역구가 부산 남구 갑입니다. 정개특위 위원 중에서 딱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제가 해당

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많이 그것을 하셨겠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은 아주 부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신당에서 추천한 분이 4명, 한나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2명, 중앙선관위 추천 1명으로 총 1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나라당 입장을 고려하는 위원은 11명 중에서 4명으로 7 대 4 내지, 중앙선관위는 중립이라 하더라도 6 대 4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애당초 한나라당에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공청회와 각 당의 의견을 모두 취합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최종 확정안은 이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구 조정을 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3 대 1 비율을 초과하는 위헌 선거구를 조정을 하는 것인데 부산 남구라든지 대구 달서, 여수 등의 선거구는 각각 충분히 인구 상·하한선을 충족하고 있어서 위헌 선거구가 아님에도 처음부터 이 선거구를 합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남 의석 2석 감소, 전남 의석 1석 감소, 전남 의석수 유지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런 확정방안을 가지고 결정한 아주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획정위의 최종안 결정을 보면 위 선거구를 무조건 합구하는 것을 전제로 2개나 1개 줄이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였는데 이것은 영남 지역의 선거구 2개 감소, 호남 지역 선거구 감소 하나를 전제로 최종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불공정하게 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호남지역 선거구와 비례대표를 줄이려 하지 않다 보니까 늘어나는 의원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은 대표자들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은 대표자들을 가지고 비례대표 숫자는 줄이지도 않고…… 이것은 대의민주 정신에 합당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독립된 선거구인 부산·대구·여수 선거구는 선관위라든지 국회 법제실에서 ‘독립된 선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칠 법적 근거가 없

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부산·대구·여수를 무조건 합구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획정위원을 제출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부산·대구·여수의 경우는 한나라당 추천 위원이든지 아니면 민주당 추천 위원이든지 그런 것 구별 없이, 지역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행정구역에 하나의 선거구를 가지고 인구가 넘칠 때는 분구를 하고 인구가 하한선이 떨어질 때는 인근 선거구에 통폐합을 하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 남구나 여수의 경우는……

○**김정훈 위원** 아니, 답변 중에 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요. 행정구역을 하기 전에 인구 수를 가지고 먼저 조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인구 수를 가지고 조정해도 안 될 때는 나중에 행정구역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부산·대구·여수는 인구 수를 가지고 한 개 아니고 딱 이 3개 구역만 행정구역을 접목시켜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부산의 경우에 부산 서구가 대선 일자 기준으로 13만 5000명입니다. 부산의 중·동구가 15만 7000명입니다. 2개를 합치면 29만 2754명으로, 우리 남구가 갑·을 2개를 합치면 29만 7330명입니다. 인구로 하면 먼저 줄여야 될데가 작은 데부터 붙여와야지 왜 갑자기 부산·대구·여수를 행정구역을 딱 접목시켜 가지고, 그 3개 지역만 행정구역을 붙여서 2개 더해 보니까 최종 상한선에 미달한다 해 가지고, 하한선을 넘는데도 그 3개를 붙여 놓고 시작을 한 전제가 뭐예요? 이게 제대로 조정이 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위원님, 위원회에서는 한 행정구역이 상한선을 초과해서 분구가 되었다가 상한선에 미달할 때는 1개의 행정구역이 1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는 원칙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고 위원 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왜 다른 데는 행정구역을 접목을 안 시키고 부산·대구·여수만 행정구역상 2개를 합쳐 상한선에 미달하니까 2개를 합쳐라 한 것 아니에요? 부산 남구도 15만 4000이

고 을도 14만 4000이면 지금 각각 독립된 인구 상·하한선을 충분히 충족하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행정구역을 접목시켜서 2개 더한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행정구역을 접목시키지 않고 왜 부산·대구·여수만 행정구역상 합쳐 보니까 최고 인구에 미달한다 해서 그 3개 지역만 합쳤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답변하세요.

다른 지역은 왜 행정구역을 감안 안 하고 부산·대구·여수만 행정구역을 감안해서 묶었느냐 이 말입니다. 각각 독립된 인구 상·하한선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는 지역구들인데…… 국회의원 선거가 무슨 지방선거입니까? 왜 같은 행정구역 단위로 난데없이 부산·대구·여수만 묶었습니까? 그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주성영 위원 기준도 그렇게 세워 놓고 그러네.

○위원장 이상배 됐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왜 부산·대구·여수만 행정구역을 접목시켜서 묶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데도 전 행정구역을 다 접목시켜서 묶어 보니까, 행정구역 플러스 인구 수 하니까 부산·대구·여수가 제일 적다 그래서 그것부터 차차 순차적으로 합쳤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행정구역을 접목시키지 않고 왜 부산·대구·여수만 행정구역을 접목시켜서 3개를 묶어 놓고, 전제로 해 놓고 왜 전남 1석 줄이느냐 2석 줄이냐 안 줄이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정하게 확정했다고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상배 김정훈 위원!

○김정훈 위원 부산·대구·여수만 그렇게 불공정하게 행정구역으로 묶은 이유가 뭐예요? 왜 다른 지역은 행정구역 접목 안 시킵니까?

○위원장 이상배 김정훈 위원!

○김정훈 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위원장 이상배 부산·대구·여수만 묶는 게 아니고……

○김정훈 위원 아니, 부산·대구·여수만 행정구역으로 접목시켜서……

○위원장 이상배 각 행정구역별로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되면 통합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2개 분구하는 인구가 되면 분구를 했고……

○김정훈 위원 하한선에 미달이 안 됩니다. 인구가 15만 4000에 14만 4000……

○위원장 이상배 3개 분구가 안 되면, 또 그대로 거기에 미달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지 어느 지역을 정해 놓고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말이에요.

○김정훈 위원 아니, 행정구역을 접목시키려면 전부 다 행정구역을 접목시켰어야지 왜 부산·대구·여수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조용히 하세요!

○주성영 위원 최소화하려고, 정해 놓고 왜 그러냐고요.

○위원장 이상배 주 위원!

그다음에 정성호 위원 말씀하세요.

○윤호중 위원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시자고요.

○김정훈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이성적으로 얘기할 성질이에요? 부당하게 해 가지고 선거구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정성호 위원 김정훈 위원님,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왜 부산·대구·여수만 그렇게 행정구역을 접목시키느냐 말이에요. 15만 4000에 14만 4000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상배 5분 내로 해 주세요. 김정훈 위원!

○정성호 위원 얘기 좀 할게요.

○윤호중 위원 이렇게 계속하면 이해당사자는 다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성호 위원 양주·동두천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박병섭 부총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훈 위원님, 흥분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김정훈 위원 본인 입장이 되어 봐요, 그게 흥분 안 하게 생겼다. 지금까지 있던 선거구가 없어지게 생겼다고 생각해 봐.

○정성호 위원 물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존중해야겠지만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님 편들려고 나왔으니까 잠깐만 주세요.

○선병렬 위원 왜 혼자 다 하려고 그래?

○정성호 위원 어쨌든 부총장님 고생하셨는데……

○위원장 이상배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에는 국회의원과 정당원이 다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획정위원회에 국회의원과

정당원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05년 8월에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간전문인으로 하여금 획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늘 획정위원회 임무가 끝나고 우리 위원장께서 호의적으로 참석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위원장님, 저는 호통치려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상배** 그래요, 말씀하세요.

○**정성호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원칙적으로 지금 공직선거법의 규정이나 헌법의 여러 가지 취지로 볼 때 기존의 1개 행정구역이 인구 상한이 넘어가지고 2개의 선거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2개의 선거구를 합쳐 보니까 또 상한에 미달되니까 이것을 다시 합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법률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합쳐서 하한이 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선거구를 유지한다는 게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위헌은 아니지요.

○**정성호 위원** 위헌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거법 제25조의 취지가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의 행정구역 내에 2개의 선거구가 있었는데 각각의 선거구라고 하는 것은 인구 하한을 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헌은 아닙니다.

이런 선거구라고 하면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게, 이미 하나의 선거구가 있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게 국회의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대의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 대표자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출발이 거기이기 때문에 이미 그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의 틀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게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합쳐지게 되었을 때 이미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 선거구의 국회의원들을 통해 지역의 정치적 의사를 모아서, 형성해서 자기들의 대의

민주주의를 관철하는데 이 틀을 그냥 지역 주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합쳐 버린다는 게 사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인구,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교통, 지세, 기타 조건…… 이 기타 조건에 분명히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게 되니까 사실 김정훈 위원님이나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반발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그런 반발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게 지역 주민들, 해당 국민들의 반발이 더 심한 상태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되어야 되는 게 맞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 지역 주민도 국민의 일부분입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역구 존중에 관련해서는, 이게 특정 전남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농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저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농촌 지역구가 어떤 형태로든지 존중되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정말 신중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수고했습니다.

류근찬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류근찬 위원** 충청남도 서천·보령 출신 류근찬입니다.

지금 지역별로 확정된 부분과 관련해서 납득이 안 간다는 발언도 계셨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 일환으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해 볼까 합니다.

아까 우리 획정위원장님 말씀 중에 대전시 관계를 검토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던데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했습니다.

○**류근찬 위원** 대전 서구 문제가 여기 자료에도 많이 와 있습니다만 하나를 분구해서 1명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많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지난번에 획정작업을 하실 때 충분히 그것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대전의 경우를 보면 15대 국회에서, 그때  
까지만 해도 대전이 7석이었습니다. 그런데 16대  
국회를 앞두고 1석이 줄면서 지금 6석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표의 등가  
성이라든지 대표성 이런 것을 보면 대전 서구가  
대단히 지금 억울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느끼시  
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  
니다.

○류근찬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조정이 안 되었  
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지금 위원  
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대전의 경우 다른 광역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저  
희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  
선거법 제25조에 의하면 시·군·구별로 선거구  
를 획정하게 되어 있고 인구가 상한하게 되면 분  
구를 하고 또 더 많아지게 되면 3개로 나누어지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은 평균 인구  
수 곱하기 3을 넘어야 3개의 선거구가 되는데 서  
구의 경우에는 평균 인구 수 곱하기 3에 미달되  
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  
고 있습니다만 갑·을·병으로 분구하기에는  
인구가 좀 모자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런데 대전 서구를 들여다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대전  
이 147만 명이고, 그다음에 광주가 141만 명입니  
다. 그런데 지금 광주는 광산구를 떼는 안이 올  
라와 있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  
니다.

○류근찬 위원 그러면 광주의 경우는 지금 6만  
명이 적은 도시인데도 대전보다 2명의 국회의원  
이 더 많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울산이  
109만인데 지금 국회의원 수가 109만하고 147만  
하고 같은 6명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기술상 행정구역을 뛰어넘어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둔다 그 말씀 아닙  
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 획정위원회로서는 방법이 없었고  
요, 광역단체 간의 불균형 문제는 좀더 제도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근찬 위원 굉장히 불합리한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다른 위원님도 이 문제를 지적하실 것으  
로 압니다만 아무튼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문  
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이 많은데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가성이나 대표  
성 문제로 치면 유독 충청도가 수도권 다음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성과 등가성을 따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맞습니  
다.

○류근찬 위원 왜 이렇게 충청도가 만날 호남이  
나 광주 이런 데 비해서 표에서조차, 등가성에서  
조차 현격하게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전 서구가 지금 50만 명이 넘는데 갑·을·  
병 3명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묵살되었다는 부분  
은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에 선거구 경계 조정을 한 게 있지  
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  
니다.

○류근찬 위원 천안 을 지역 두 군데를 갑 지역  
으로 보낸 게 있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  
니다.

○류근찬 위원 이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천안 갑·  
을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위헌적 상태는 아니지  
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위헌적 상태  
만 해소하는 게 아니라 선거구 간에, 특히 갑·  
을 간에 심각한 인구 편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  
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갑·을 간에 인구 편차  
가 상당히 많아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게 된 것  
입니다.

○류근찬 위원 갑·을 간에 편차가 얼마나 그렇  
게 심각합니까? 갑·을 간에 편차가 그렇게 심하  
지 않아요. 천안 을이 24만 7500이고 천안 갑이  
21만 5753명이거든요. 자료 한번 보세요. 한 3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제가 획정위원회에  
서 낸 안을 보면 2안이 채택된다고 그러면 예단  
해서 이런 경계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선거  
구획정위원회가 1·2안을 내면서 어느 안이 채택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2안이 마치 채택될 것을 예단해서 경계를 조정해 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2안의 경우에는 꼭 조정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류근찬 위원** 그렇지요. 2안이 채택되면 조정해도 된다는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1·2안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안이 채택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맞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천안의 경우는 분구를 하도록, 행정구역별로 구청을 증설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 7월 1일부터 아마 그게 실현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따라서 선거구가 들락날락해서는 안 되는데 갑의 경우는 지금 신시가조 조성사업이 맹렬히 진행되고 있어서 인구 증가 요인이 장차 1, 2년 사이에 굉장히 늘어납니다. 지금은 다소 3, 4만 차이가 나지만 그 인구를 받으면 갑과 을이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왜 경계를 주어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그거예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지금 말씀하신 자세한 사정은 저희 위원회가 그때 당시에는 인지를 못 했었고요, 인구가 어느 정도 편차가 나기 때문에 조정을 했는데……

○**류근찬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1안이 되었던 2안이 되었던 지금 예컨대 을선거구 2개 동을 갑으로 넘긴다든지 하는 경계 조정은 굉장히 무의미하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정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배** 다음은 선병렬 위원, 최인기 위원…… 선병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최인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류근찬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시켜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순서를 미리 좀 부탁했습니다.

박병섭 위원장님, 선거구 획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공직선거법 제25조 다 아시겠지만 읽어 보면 유일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구 획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제한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를 일부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 그러니까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만이 유일한 금지사항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인구 편차가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선거구를 획정해 놓은 후에 인구 편차가 3분의 1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런데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인구 편차 3분의 1을 맞추는 것에 오로지 집중해서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구가 3대 1 편차가 나지 않게 하되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한다, 이러한 내용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류근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한 6만 2000이 많은데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숫자 차이가 2석이 차이 나야 될 형편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자치구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과 관계없이, 그런 네거티브한 조건과 관계없이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거지요. 인구가 6만 2000이 많은데도 국회의원 수가 둘이 적은 것은…… 물론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배분하는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제25조에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논의할 때 저희들도 대전시에서 여러 경로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런 문제를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한 선거구 인구가 30만 이상 상한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할 수 없다는 것만 고집하셨지 공직선거법상 제25조의 더 긍정적인 기능, 그러니까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서 획정해야 된다는 것은 완전 도외시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지금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대전지역의 경우 다른 광역과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다만 대전 서구의 경



우에는 평균 인구의 3배에 미달되기 때문에 3개의 선거구로 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만을 넘고 60만은 안 되는 다른 선거구들이 또 갑·을로 존재하는 선거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론하고 관계없이 대전에서 구를 조정할 때……

○**선병렬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만 몰입해서 대전시의 선거구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인구가 6만 2000이나 많은 광역시가 국회의원이 2명 적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용해 줄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확정한다라고 하는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상의 취지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30만이 넘는 선거구가 없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권고 그것은 선거구를 확정해 냈을 때, 이런 인구나 행정구역,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선거구를 확정했을 때의 편차가 3 대 1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니다.

○**선병렬 위원** 그러면 대전시의 선거구를 하나나 2개 늘려 준다고 하더라도 10만 미만이나 30만 이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고에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게 공직선거법상 제25조의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서 확정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너무 소극적인 인구 10만 몇 천, 31만 몇 천 거기에만 매달려서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적극적인 취지를 구현을 안 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선병렬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릴 겁니다.

○**위원장 이상배** 선병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일도 위원님!

○**배일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 또는 통합에 반대하는 주장 또는 다른 주장들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획정위원회는 획정위원회대로 획정한 것도 나름대로의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십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위원장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배일도 위원** 아니,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님이세요?

○**위원장 이상배** 위원장이었지 지금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위원장이었습니다.

○**배일도 위원** 지금은 아니시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배일도 위원**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전 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지금 공직선거법에 보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늦어도 총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취지, 그러니까 1년 전까지라는 것을 왜 정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논의를 진행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거 1년 전에 선거구획정안을 의장께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 몇 달을 앞두고 우리를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것도 빨리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왕 위원에 위촉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배일도 위원** 예,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그러나 4월 9일이 선거일이라면 늦어도 2007년도 4월 8일 이전까지는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런데 2008년도 활동 기간이 1월 18일~2월 15일이고…… 위촉 자체가 법률 위반이지요, 엄격히 따지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그 얘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중간에도.

○**배일도 위원** 그리고 이게 1년 전이라는 것을 상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선거를 직접 관리하시는 사무총장님, 졸속이라면 졸속이고요, 어떤 안으로 결정이 나든 이렇게 만약에 결정이 되었을 때 선거관리 업무에 문제점은 생기지 않습니까? 인원이랄지 재정이랄지 선거구민에게 어떤 사실을 확정할 후의 홍보랄지 또 기본적 취지를 갖고 있는 민주주의적 의사의 표현 방식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점이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선거구 획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벌써 1년 전에 획정이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우리 선거구가 어느 범위이고 나는 어느 선거구에 속했고 이런 걸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시일이 굉장히 촉박한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선거구가 바뀌어진 부분이라든지 또 선거제도를 안내·홍보하는 부분에서 일부 예비후보자 등록이 좀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일도 위원** 선거구 획정할 때 참고해야 될 기준을 여러 가지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재론을 하지 않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의사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표출하도록…… 대의민주주의니까요, 대신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 있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감안될 수 있습니다. 면적의 크기랄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세’라는 말은 나와 있지만 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농촌의 문제가 있고 도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과 같이 105층 빌딩이 새로 생기는 이런 시기에서 한 빌딩만 해도 인구 10만이 될 수도 있고 15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주 인구가. 이런 시점에서 과연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하느냐, 이런 고민이 획정에는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상정해 놓고 했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획정위 구성 자체가 우리가 정한 법률에 위배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배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기 위원** 박병섭 위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사실 우리가 정치관계특위에서 박 위원장님께 여러 가지 따지듯이 된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아닙니다.

○**최인기 위원** 지금 위원장님 입장에 있지 않지요? 위원장의 임무는 끝났지만 참고로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표성 문제 말씀인데 우리가 선거구 획정할 때 대표성 세 가지가 고려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인구의 증가성을 통한 대표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과 면적, 세 번째가 자치단체…… 자치단체도 대표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인데 지금 현재는 인구만 가지고 획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의안대로 도시와 농촌인구 기준을 이원화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바꾸는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 점 동의하십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런 부분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되었고 건의사항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2안과 1안, 그러니까 여수는 그냥 줄인 것으로 이렇게 하시고 2안은 추가로 전남에서 하나 줄이느냐 둘 줄이느냐 이 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추가로 더 줄이느냐 안 줄이느냐 이 안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농촌과 행정구역의 증가성을 고려한다면 2안으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지금 1안과 2안의 대립하는 부분은 표의 증가성을 좀더 강조하는 부분과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부분, 또 적절히 조화하는, 여러 가지 시각차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두 안 다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인기 위원** 그러니까 획정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충실하자면 2안이 더 가깝다, 난 그렇게 보거든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1안의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된 2개의 선거구를 다 통폐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촌지역 선거구를 어느 정도 존중한 면도 있습니다. 완전히 무시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최인기 위원**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전남의 경우는 지금 한 군데 선거구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걸 다 조정하고 나면. 그런데 그것은 인구가 줄어들었는데도 선거구가 안 줄어들면 이상하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여러분 획정위에서는 줄이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에 보면 아무래도 표의 증가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의견의 편차가 존재했던 겁니다.

○**최인기 위원** 지금 사실 4년 전과 비하면 말이지요, 전국의 인구가 88만 1000명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구가 지금 평균으로 20만 잡아도 4석 반, 5석 가까이 늘려도 괜찮거든요, 그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저희 위원회에서도 인구도 좀 늘었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입장은 위원 전체의 의견이었습니다.

○**최인기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얽매어서 가지고 농촌인구 감소 구역을 가급적 옆에 인접해 붙여 가지고 줄이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는 조금 미흡하다,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1안의 경우에도 그런 노력을 아주 안 한 건 아닙니다.

○**최인기 위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더 연결해서 붙이면 그렇게 줄이지 않아도 될 수 있었거든요, 1안의 경우도. 그래서 그런 점은 위원장님께서 기속력 있게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상당히 고생한 흔적도 보이고요.

하지만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시 받아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 획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끼고 18대에는 이런 걸 좀 고치면서 무슨 8년, 그러니까 2기 동안은 바꿀 수 없다든지 무슨 그런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우리 위원

회에서 획정 작업을 통해서 배려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농촌 지역구를 배려하는 어떤 특별법이나 특별 규정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어느 분……

○**정진섭 위원** 저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안 하시면 더 괜찮은데……

○**정진섭 위원** 그래도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정진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진섭 위원** 박병섭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도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꼭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 특히 앞으로의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그 발전적 방향 때문에라도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시인하신 것처럼 광역 단위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제도적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정진섭 위원** 일본의 경우에 보면 광역 단위로 먼저 의석 수를 배분하고 그 광역 단위 안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를 먼저 분구하고 그다음에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또 분구하고 통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구되는 의석 수를 맞추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 건의에 넣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지금 말씀하신 논의는 일부 있었지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좀 상당히 폭넓은 논의이기 때문에 획정위 건의사항으로 올리는 것은 좀 너무 큰 주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정진섭 위원** 우리가 인구의 증가성이라고 하는, 표의 증가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가 대표하는 시·군의 문제도 있지만 대표하는 시·도의 문제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분의 1이니까 국회의원 수도 4분의 1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제도적 개선 문제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25조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정진섭 위원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농촌 선거구에 대해서 보호 내지는 어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도농 간의 불균형을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장님 스스로 조장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을 더 많이 대표성을, 과잉 대표성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25조의 어떤 법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가신 겁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을 강조하는 분한테는 농촌 지역에 대한 지나친 배려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획정위원회에서는 현재에서 편차로 인정한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3 대 1 기준 내에서는 최대한 배려를 하자, 뭐 이런 정도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정진섭 위원 전남의 경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까 표의 등가성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현재의 3 대 1의 결정을 받은 것은 제가 청구인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3 대 1이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될 금과옥조로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지금 현재에서도 권고하듯이 3 대 1보다는 2 대 1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학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인구 변화가 지극히 심해서 그것을 급격히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표의 등가성이 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섭 위원 모든 선거구의 문제를 기계적으로 다 균등하게 맞추지 못할 바에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선거구가 그 나름대로 어떤 질서랄까, 문화랄까 이런 것이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가운데 여기서 특별하게 문제가 생겨서, 예컨대 어디는 너무 과대해졌든가 어디는 너무 과소해졌든가 하는 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획정위가 할 일이지 기본적

으로 판을 다 흔들어서 ‘갑·을 간에 합쳤더니 모자라더라.’ 각각 갑·을이 다 하한선을 넘고 있는데 ‘다 합쳐 보니까 모자라더라.’ 그리고 이걸 다시 또 합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획정위로서는 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현상, 질서, 문화 이런 것을 잘 지켜나가도록, 발전되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방향 아닙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가능하면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칙에 관한 토론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획정안에 나와 있는 대로 의견의 합치를 좀 보았습니다. 지금 다른 입장에서도 논의가 초기에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정진섭 위원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 농촌 지역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공감한다 하더라도 6개 선거구를 다 흔들어서 이리 합치고 저리 합치고 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학자적 양심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게리맨더링 논란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선거구를 많이 조정을 한다는 그런 비난은 동의할 하지만 게리맨더링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이런 게 우리 위원회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정진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수고했습니다.

장윤석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한나라당 경북 영주 장윤석 위원입니다.

이 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이번 선거구 조정안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고 고심을 한 것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몇 가지 관점에서 부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또 우리 선관위 사무총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획정위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현행 선거구를 전면

적으로 검토한 듯이 보입니다. 즉 선거구 인구편차가 현재 결정을 의미합니다라는 평균 인구 수  $\pm 50\%$  이내가 되도록 만들어 보자, 그렇게 고심을 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 취지를 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평균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평가 방법은 어느 시점에서의 선거구 획정이 전체적으로 위헌이나 아니냐…… 위헌으로 보는 여러 가지 기준은 많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헌이나 아니냐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임은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재가 이 방법을 채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기실은 최소 선거구하고 최대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1 대 3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이론적인 구성으로 평균 인구 수에  $\pm 50\%$ 를 수량적으로, 계량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사실 평균 인구 수라는 것은 말하자면 존재하지 아니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선거구의 위헌 여부를 논할 때의 검증 방법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4년마다 실시되는, 매년 선거가 있을 때 위헌 소지가 있는 선거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이른바 수시 선거구 조정 방법으로는 저는 그 기준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더더구나 지금처럼 선거법이 제시하는 1~2년 기간 전도 아니고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구를 흑시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선거구가 있느냐 살펴보는 그런 조정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선거구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현재가 제시한 그러한 평균 인구 수  $\pm 50\%$  기준에 의한 평가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런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할 때의 기준으로서는 상당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점에 관해서 이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행 선거구 조정은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가 제시하는 1 대 3 또는  $\pm 50\%$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구가 도출이 된다면, 발견이 된다면 그 부분을 손질을 해서 위헌 소지를 제거하면 충분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243개구의 선거구를 인구 수로 1번

부터 243번까지 일련번호를 붙여 놓고 보면 이렇게 볼 겁니다. 최소 인구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1 대 3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뒤쪽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분구해 버리면 위헌 소지가 제거될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최대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3 대 1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전부 합병해 버리면 위헌 소지는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은 극단적인 방법이거든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243개의 선거구를 일련번호를 붙여 놓고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를 동시에 관찰을, 관조를 해 보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 변화를 최소화해 가면서 분리하거나 통폐합을 동시에 시도해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pm 50\%$  기준이 현실적이지 아니하다는 불합리성도 배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런 관점에서 최소 선거구 2개를 줄여 나가고 최대 선거구 세 곳만 조정을 하게 되면 전체 243개 선거구의 위헌 소지가 있는 선거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면 이따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에 관해서는 지금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라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부당했다, 첫째는 행정구역과 별도로 실제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선거구역의 실재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구가 최초로 존재할 때는 부득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선거구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선거구를 만든 그 이후에는 시간이 경과하고 선거가 반복해서 실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확고하게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미 그 선거구역은 행정구역과 별도로 존재하는 엄연한 선거법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상의 실체를 행정구역에 연연해서, 이미 오랜 시간 전에 기준으로 삼았던 행정구역에 연연해서 자꾸 생각하는 것은 저는 사리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산 남구나……

○위원장 이상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 다 되어 갑니다.

○**張倫碩 委員**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번 확정위원회의 선거구 조정은 실제하는 선거구의 존재를 좀 외면했거나 가벼이 봤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확정위의 선거구 조정안이 일관성과 형평성을 아주 상실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구 조정안을 보면 호남·전남 지역의 선거구 조정안은 1안이든 2안이든 보면 선거 수를 유지하거나 선거 수의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반수 이상의 선거구에 손을 댔습니다. 통합과 분리를 했습니다. 다만 여수시는 어떻게 해도 다른 지역구와 통합·분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이유로 부산 남구나 달서구도 인접 선거구와, 전남 선거구에서 다른 인접 선거구와 병합과 분리를 해서 선거구를 조정했던 마찬가지로 달서구도 남구도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분구로 가 버리고 전남 지역의 10여개의 선거구는 반수 이상을 통폐합·분리를 한 것은 양 선거구 확정에 있어서, 조정에 있어서 형평성을 심히 결했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그 서너 가지 관점에서 위원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장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정당 의견 청취할 때도 3 대 1 얘기를 하셨고 사실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 깊게 논의를 했고 헌법재판소 판결문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독일식 모델인 50% 편차 이 부분을 모델로 하고 있고 3 대 1은 그것을 일반인에게 좀 설명하기 쉽게 쓰여 있기 때문에 현재 판결의 문언적 해석에 충실한다면 인구 상하 편차 50%를 벗어나는 게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3 대 1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꼭 위헌판결이 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마 우리 확정위의 분위기가 어떤 공직선거법 25조라든가 현재판결의 범위 안에 좀 소극적으로 갇힌 면이 있습니다마는 확정위의 성격상 그것을 뛰어넘는 논의를 하기는 좀 어려웠었고요.

그다음에 현행 선거구를 존중하는 부분도 특히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격론 끝에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남의 2개의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 되어서 1안, 특히 2안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조정이 좀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상당히 격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게리맨더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지나치게 선거구를 많이 조정을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사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농촌 선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게리맨더링이 아니라면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결국은 2개의 안을 낸 배경이 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하나만 보충해서……

○**위원장 이상배** 다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웬만하면 그만 하십시오.

○**주성영 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예, 주성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중전의 답변 과정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구 확정방안’ 이것을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중간자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주성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말이예요.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님 내지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서 보고했다는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그 출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나 위원장인 저도 확인할 수는 없고요. 회의가 시작되면 자료가 배포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행정 지원하는 데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성영 위원** 위원장님! 왜냐하면 이 자료를 저는 괴문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선거구획정위 참고자료가,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남을 기준으로 한 3개 안 중에 바로 1안, 2안이 채택되어 가지고 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전남 의석을 2석 줄이느냐, 1석 줄이느냐, 유지하느냐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2개의 안을 채택해 가지고 이 최종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문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성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합의과정을 거쳤고요. 조금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이 전남의 2개 선거구 조정하는 부분하고 여주 분구하는 부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논란과정을 지켜보고 그것을 정리한 자료가 그 자료가 아닐까 저는 추측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전까지는 다른 사항은 합의가 되었고, 합의 안 된 사항을 표를 만들어서 아마 실무진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렇지만 최종보고서에서 채택된 자료가 어떻게……

아까 위원장께서는 분명히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지도 않은 이런 자료가 최종보고서에 채택되었다는 것은 우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서 기초를 의심스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선관위 사무총장님께도 여쭙 봤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부칙 7조의 선거구 3개는 이번 선거에는 재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 부분은 그때 당시 2004년도에 조정된 것으로 효력이 끝난 그런 부칙 조항이 아닙니까?

○**주성영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원 위치로 돌아와야……

○**주성영 위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본 법대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주성영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검토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주성영 위원** 이 3개의 선거구—해운대구·기장하고 부산 북구하고 인천 서구·강화군—이 선거구는 왜 이번에 검토 결과를 유지해야 된다

고 봅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그 별표에 나타난 3개의 예외조항은 물론 당연히 국회에서 개정을 할 수도 있고 현행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여러 가지로 현행 선거구를 존중한다는 면에서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주성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 선거구를 존중한다고……

정치적 안정성을 고려했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런 취지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1안·2안에도, 아까 제가 인용했습니다마는, 통합 조정에 따른 선거구 변화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원칙으로 했어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주성영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시에 따라서 위헌인 선거구는 용인, 화성, 권선, 광산, 4개 선거구 맞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맞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다음에 감소되어야 될 데가 영광·함평, 강진·완도 맞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그것은 감소가 아니고 조정 대상입니다.

○**주성영 위원** 조정 대상이지요? 조정대상 이게 맞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주성영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조정했을 때 등장하는 게 파주가 등장합니다. 그렇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렇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러면 이게 최소한 아닙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위헌상태를 해소하려면 최소한입니다.

○**주성영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즉 일관되게 논의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판시에 따라서 위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용인, 화성, 권선, 광산구하고 영광·함평, 강진·완도군하고

또 이것을 건드렸을 때에는 선거구가 많아지니까 등장하는 파주시, 이 정도 조정하면 최소한의 조정 아닌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위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은 그 정도면 됩니다.

○주성영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호남 지역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개 군입니까? 이것을 전부 건드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이상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주성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딱 하나만……

아까 물어봤는데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래, 가만 있어 봐요.

이인영 위원님은 말씀 안 계시지요?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십시오.

○김정훈 위원 위원장님, 내가 아까도 했는데,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인구 수와 행정구역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인구 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정이 안 될 때 행정구역으로 넘어간다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다 적용하지는 않았지요? 인구 수와 행정구역 다 한 것은 아니지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행정구역을 적용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다른 데 행정구역을 조정을 다 해 가지고 한 거예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그래서 여주가 또 분구하게 된 겁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인구 수를 가지고 먼저 하고 그다음 부족할 때, 도저히 안 될 때 행정구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산·대구·여수만, 다른 데는 인구가 했어요, 그런데 부산·대구·여수만 유독 행정구역을 적용해서, 각각이 충분히 독립된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3개 지역만 행정구를 적용해서 묶어버렸습니다. 그 3개—부산·대구·여수—만 그렇게 행정구역을 적용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우리 위원회가 대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의견 접근을 본 선거구 획정의 원칙은 시·군·구와 같은 독립된 행정구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선거구를 갖고 상한선이 넘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분구를 하고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인접 시·군과 통합을 하고 이런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어떤 선거구……

○김정훈 위원 그런데 부산 남구 같은 경우에도 15만 4000이고 을도 14만 4000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각각이 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그래서 부산 남구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1개의 행정구역인데 상한선을 초과했기 때문에 분구가 되었고요. 그 사이에 인구가 상한선 아래로 줄었다면……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사이에 줄었다는데 그것은 다시 합쳐서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남구만 유독 그렇게 합쳤느냐 이거예요. 계산을 할 때 왜 남구만 합쳐서 계산했느냐 이거예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남구가 1개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봤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이거 공직선거법 25조에 기준이 시·군·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구가 인구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조정한 것이지 선거구 위주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 개인의 의견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산 남구에도 보면 갑·을이 최소 인구 수를 넘기 때문에 왜 합구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그렇게 의견 접근을 했기 때문에 결정한 거지 저 개인적으로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훈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남 지역은 아까 반 게리맨더링 하듯이 안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부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 게리맨더링 식으로 나누다 보면 안 줄일 수가 있는데



왜 유독 부산 대구는 당연히 합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전남 지역만 이렇게 반 계리맨더링 식으로 논의를 한 이유가 뭐예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여수, 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시다마는 논의 순서에서 초반 부분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부분이고요. 뒤에 전남의 2개 선거구 문제와 결부되어서 같이……

○**김정훈 위원** 초반에 결론을 내렸다는데 초반에 3개를 묶어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김정훈 위원** 그러면 부산이나 대구도 전남지역처럼 하나 줄이느냐, 두 개 줄이느냐 하면 막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김정훈 위원** 그러면 부산, 대구도 그렇게 나누면 안 줄일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왜 전남지역만 가지고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전남 지구라는 표현은 좀 오해인 표현이고요.

○**김정훈 위원**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방안에 보면 ‘1안, 전남 2석 감소. 2안, 전남 1석 감소. 3안, 전남 의석수 유지.’ 이것 위원회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위원회 논의를 실무진이 표로 만들었는데 전남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서 이것은 전남이 아니고 함평·영광이나 강진·완도 같은 2개의 선거구가 농촌 지역구였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를 하자는 논의였지 그게……

○**김정훈 위원** 그러면 농촌만 배려하고 도시는 뭐 배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배** 자, 이제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인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인영 위원** 예, 이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여쭙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주 원론적인 문제이고 권한 밖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구 정수하고 비례대표 정수하고 그것

을 우선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선에서 배분할 건가 이렇게 논의한 다음에 지역구 정수를 조정해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그 논의는 아마 299명을 확정해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그런 논의가 가능할 텐데요. 우리의 논의가 그런 논의가 아니었고 어차피 대도시의 선거구가 분구가 되면 지역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상응해서 농촌 지역구를 줄이지 않으면 지역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을 비례를 줄여해서는 안 되고 의원 정수는 늘려야 된다, 이러한 원칙적인 얘기를 먼저 전제를 하고 다음 논의를 한 겁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의원 정수를 299를 넘어서 300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넘어야 된다고 전제하고 이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치권의 논의로 오해가 되어서 ‘정치권이 자리를 늘리려고 한다, 자리를 줄여야 하는데’ 이런 비판에 저희들이 직면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이인영 위원**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권의 어떤 이해관계나 논리를 초월해서 객관성 독립성 이런 것을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여론이나 일반 국민들을 설득해보시거나 이런 적은 없나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이 위원님 오시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우리가 공청회에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또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인구비례나 경제적인 수준, 국회의 업무량의 증가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는, 대체적인 의견이 그렇습시다마는 국민 정서의 경우에는 늘리는 데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민간으로 구성된 우리 획정위원회에서 국민 정서에는 조금 배치되지만 합리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봤고요.

저도 중간에 방송 인터뷰를 하실 때 질문자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과감하게 왜 늘려야 되는가의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 하니까, 국민적인 혹은 여론의 공감대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지역구의 조정, 케리맨더링 내지는 반 케리맨더링 그리고 또 정당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래서 어떤 데는 유지하려고 그리고 어떤 데는 줄이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불필요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더 따져 들어가면 의원님들 개개인의 이해관계들이 충돌하는 지점들도 아주 첨예하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분들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그래서 초기에 확정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런 문제의식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예.

○이인영 위원 이것이 확보되는 상태 속에서 논의가 되지 않고서는 계속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 이런 것들이 진행될 소지가 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쭙어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박병섭 소위 1안이나 2안이나 다 지역구가 좀 늘게 되고 의원 정수가 느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 안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확정위원회가 정치인으로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공론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인영 위원 예.

○위원장 이상배 수고하셨습니다.

○張倫碩 委員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이제 그만 합시다.

○張倫碩 委員 확인을 좀 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되었습니다. 그만 해도 돼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모두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들께서 늦게까지 참석해서 많은 이해가 되신 줄로 압니다.

오늘 박병섭 위원장님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또 위원들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영식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위원장님, 내일은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위원장 이상배 계속이지요. 계속해서 내일 결론을 내려야지요.

○선병렬 위원 오늘 다 하지요?

○위원장 이상배 행정자치위원회 때문에 우리가 장소를 옮겨야 될 입장이 되어 있어서……

내일은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일이 목요일이고 모레가 금요일입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그 이틀 동안에 우리가 좀더 이해를 하시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로서 좋은 결론을 내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확정안에 관해서 소위에 회부해서 심의를……

○위원장 이상배 그것은 지금까지 정당대표로 동의 건 개진을 많이 하시고 했잖아요.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기현	김정훈	류근찬	배일도
선병렬	안경률	양형일	윤호중
이상배	이영순	이인영	장윤석
정성호	정진섭	주성영	최인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전문위원	백환기

○정부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영식
법제실장	이종우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장	박병섭

【보고사항】

○의안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 발의)

(2008. 1. 21 김영춘·유인태·김성곤·안영근·임종석·김명자·정성호·최재천·이화영·김재윤 의원 발의)

1월 22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 발의)

(2008. 1. 31 김기현·이경재·남경필·강길부·김양수·정갑윤·정병국·윤두환·한선

교·유기준 의원 발의)  
2월 1일 회부됨